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493 |
|----------|------|

제출년월일 : 2013. 4.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
-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위원장(판사), 위원수(11명 이내), 임기(2년)

다.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불요

다. 합의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2013. 3. 6. ~ 3. 26)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일 때에만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다.

1. 청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 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기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연구 ·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심의 · 의결 안건에 직접 관여했을 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위원회의 결정이나 의결은 문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의결 이유, 결정·의결 일자, 결정·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서명날인은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⑤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 청취) 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경계 설정의 기준에 따라 경계 결정을 하되, 경계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와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 결정의 이의신청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계 분쟁의 지적 재조사 측량 성과와 지적 재조사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
2.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때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 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의안명 :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관련조문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성자 : 기획행정국 종합민원실장 대결 우 선 택